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강기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103번길 **-* ***호 (토당동, **연립)	일시: 2017.04.17. 16:42 장소: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이마트앞 증산교(32톤) 내용: 총중량 36.85톤(4.85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5.29. 납기일: 2017.07.31.
이목원	서울시 동작구 서달로6길 ** *층 ***호 (흑석동)	일시: 2017.04.28. 15:19 장소: 마포구 성산동 성산고정초소 성산교(32톤) 내용: 총중량 36.55톤(4.55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5.29. 납기일: 2017.07.31.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2017. 09. 30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300-8347, 팩스번호: 02-300-833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969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208호, 2016. 7. 2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에너지 자립 및 대기질 개선 등 최근 사회적 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도심지 내 건축물 등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분야 대응을 강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공사 시 노후건설기계 사용으로 인한 질소산화물(NOx) 발생량 증가를 줄이기 위하여 공사장 내 70% 이상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설치 의무화
 - 오염물질 발생 최소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설치 의무화
-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및 기준 마련
 -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도입을 위해 주차단위구획의 5% 이상 전기인입선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차단위구획을 100으로 나눈 수 이상 충전시설 설치 규정 신설
- 친환경에너지 등 에너지 시설 설치 비율 상향
 - 민간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사용량의 16% 이상 설치하되, 신재생에너지 12% 초과비율은 집단에너지시설, 상수열, 에너지저장시설(ESS) 등 다양한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에너지 시설 설치 유도
-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비율 상향
 - 조명기기는 LED 조명을 포함한 고효율 조명기기 적용으로 사업자의 선택폭을 확대하여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17. 9. 27.(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참조: 환경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리라 주무관(☎ 2133-3545, FAX 2133-1019, E-mail : kimlila@seoul.go.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개정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 고시	2. 구 분						
		신설	○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환경정책과장 이상훈, 환경조정평가팀장 우종학, 담당 김리라)							
4. 근거법령명등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29조제2항				관 련 규제수	8건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해당 규모의 개발사업(건축물,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자 등							
6. 규제존속기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관련 법령 제정시까지							
7.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 규제의 내용	붙임 참조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 변경의 필요성

< 규 제 1 > : 대기질 항목

- 노후 건설기계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최근 미세먼지 관련 시민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 우리시에서는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의 공사시 친환경 건설기계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냉·온수기 및 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저녹스버너 인증을 득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

< 규 제 2 > : 온실가스 항목

-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 및 정부의 친환경 미래 에너지 정책 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LED 조명 등 에너지 절약·절감 방안을 강화하였음
 - 민간건축물의 경우 총 에너지사용량의 16%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하되, 신재생 에너지 12% 초과비용은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설계하거나 집단에너지시설, 상수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 받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로 합리적인 에너지 시설 설치를 유도하였음
 - 조명기기는 전량 고효율조명기기를 적용하되, LED조명을 포함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조명으로 사업자의 선택폭을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음
-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감축을 위하여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차단위구획의 5% 이상 전기 인입선 등 충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주차단위구획을 100으로 나눈 수 이상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음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호) [별표 12]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기준’이 시행되어 이를 준용하도록 함

< 규 제 3 > : 수질 항목

- 지하수 수질조사 및 토양오염 현황조사에서 지하수의 오염이 확인된 경우 「지하수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오염원인과 오염범위를 검토하고 오염영향과 저감대책 마련이 필요함

< 규 제 4 > : 토양 항목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거 토양을 측정하고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나 사업부지 내 기존 건물(시설물), 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철거 후 사업부지 내 토양오염 및 지하수 수질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규 제 5 > : 지형지질 항목

- 공사시 및 운영시 지하개발에 따른 지하수위, 지하수 유출량 및 지하수 흐름 변화를 예측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용을 구체화함

< 규 제 6 > : 동식물 항목

- 기존 식생 보존대책 수립을 위하여 현황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재활용 또는 폐기 등 선정 기준 수립 등 내용의 구체화가 필요함

< 규 제 7 > : 소음진동 항목

- 측정지점 건축물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층고도 함께 제시하도록 구체화함

< 규 제 8 > : 기상 항목

- 미기상 영향 예측시 주변 개발과정 및 계획에 따른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현황조사에 내용을 추가함
- 바람길 영향 분석시 건물 높이 증가 등 사업지구 특성을 반영하여 형식화되는 분석을 지양하도록 함
- 수치화가 가능한 생태면적률을 통해 미기후 변화를 검토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본 심의기준은 우리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객관적이고 신속한 운영을 위해 2005년 최초 고시되었음. 그간 7차례 변경을 거쳐 운영되어 온 바, 사회적 인식과 합의가 되어 있음
-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건설장비, 저녹스 버너 사용, 환경친화적 차량 도입과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및 LED 등 고효율 조명 설치하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공감하여 사회적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는 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스스로 도입하고 있는 사항으로 과도한 규제가 아니므로 실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수질,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 소음·진동, 기상 항목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화한 것으로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을 정량·정성적으로 제시한 사항으로 대체수단이 없으며 기존 규제 중복되지 않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해당없음”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본 고시안은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평가내용 및 기준을 구체화 및 수치화하여 객관적으로 제시함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변경안(신·구대조)

☐ 건축물 사업

■ 중점평가항목(11개 항목)

1) 대기질

구 분	현 행	변 경
평가내용	① 공사시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대기질 영향예측	① <좌동> •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각 배출원별 발생량 예측 - 건설장비별 배출계수는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편람 자료 인용 등
	② 공사시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저감대책 수립 •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각 배출원별 발생량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 건설장비별 배출계수는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편람 자료 인용 등 - 공사장내 건설기계 PM-NOx 관리계획 수립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덤프트럭 등 노후 건설기계 사용 자제 및 엔진공회전으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최소화 방안 등)	② <좌동> •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저감대책 수립 - <삭제>①로 이동 - 공사장 내 건설기계는 최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친환경 건설기계 70% 이상 사용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경유사용 자동차) EURO5 이상, 굴삭기, 지게차(건설기계) Tier3 이상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구 분	현 행	변 경
	③ 운영시 사업지구 내·외부지역 대기질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 유발교통량 및 에너지사용에 따른 영향예측 실시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 난방 등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과정 명시) · 유발교통량 및 이동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과정 명시) · 총량규제 대상 여부 및 대기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최적방지시설(BAT) 설치 검토 - 운영시 질소산화물 배출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방안 수립 · 냉온수기 및 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저녹스 버너 인증을 득한 제품 설치 등	③ <좌동> · <좌동> - <좌동> · 난방 등으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과정 명시) · 유발교통량 및 이동오염원으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과정 명시) · <좌동> - <좌동> · 냉온수기 및 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저녹스 버너 인증을 득한 제품 <u>설치</u>
2) 온실가스		
구 분	현 행	변 경
평가내용	②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 · 신축 건축물은 에너지 관리 향상을 위해 “기본기능 및 가시화, 분석 진단, 관리 및 최적화 제어” 기능이 있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 공동주택의 경우 월별 에너지소비량과 에너지생산량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도입 계획 수립 - 총 주차구획의 5% 이상 주차면 확보 -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완속 충전기는 건물 용도와 충전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계획 검토	②<좌동> · 신축 건축물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호)에 따른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용도(난방, 냉방, 환기, 급탕, 조명, 전기기기 등)별 에너지 계획 시스템 도입 - <좌동> · <좌동> -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면 확보 비율 제시 - 전기 인입선 등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 충전시설의 종류, 수량 등 제시
평가기준	· 산재생에너지 시설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 - 민간 건축물의 경우 건물 에너지사용량의 15%	· <좌동>

구 분	현 행	변 경
	이상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 12% 초과비율을 아래사항으로 대체 가능 - 에너지총량기준으로 소비량 감축설계시 감축량 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신재생에너지이외 열병합발전, 하수열,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시설(ESS) 등의 시설에서 에너지를 생산 또는 공급 받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공공건축물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급의무비율 이상 - 조명기기 전력 부하량의 90% 이상을 LED로 적용하되 가로등, 보안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제품으로 대체 가능 - 녹색건축물 예비인증 및 에너지 소비 절약계획서 작성 - 녹색건축물 인증기준에 의한 최우수(그린1등급) 등급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EPI) 검토서의 평점합계 90점 이상 또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다만 건축물의 구조 설계상 90점 이상 또는 1등급 달성이 어려운 경우는 이를 소명	- 민간건축물의 경우 건물 에너지사용량의 16% 이상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 12% 초과비율을 아래사항으로 대체 가능 - 에너지총량기준으로 소비량 감축설계시 감축량 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신재생에너지이외 열병합발전, 하수열, 상수열,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시설(ESS) 등의 시설에서 에너지를 생산 또는 공급 받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좌동〉 - 조명기기는 LED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100% 적용 (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 조명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사유 제시) -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도입계획 - 주차단위구획의 5% 이상 주차면 확보 - 주차단위구획의 5% 이상 전기 인입선 등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 주차단위구획을 100으로 나눈 수 이상 충전시설 설치 - 충전시설의 10% 이상 급속충전시설 확보(단,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인 경우 충전시설의 50% 이상 급속충전시설 설치) - 녹색건축물 예비인증 및 에너지 소비 절약계획서 작성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따른 최우수(그린1등급) 등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성능지표(EPI) 검토서의 평점합계 90점 이상 또는 「<u>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u>」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다만, 건축물의 구조 설계상 90점 이상 또는 1등급 달성이 어려운 경우는 이를 소명

3) 수질

구 분	현 행	변 경
평가내용	②지하수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②〈좌동〉

구 분	현 행	변 경
	- 지하수 관련 현황 파악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하수질 측정 - 지하수 이용현황 조사(환경부, 국토교통부 자료 인용 및 실측 조사 등)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지하수질 및 지하수 이용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좌동〉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하수질 측정 - 지하수 이용현황 조사(환경부, 국토교통부 자료 인용 및 실측 조사 등) 〈좌동〉 ※ 지하수 수질조사와 토양오염 현황조사에서 지하수의 오염이 확인된 경우 오염원과 오염범위를 검토하고, 오염영향과 저감대책을 제시
	③ 운영 시 우·오수처리계획 우·오수처리계획은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및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09)”, “하수분야 업무처리지침” 등 최근 관련규정에 의거 분류식 계획지역 해당여부 및 분류식 검토	③ 〈좌동〉 우·오수처리계획은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및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분야 업무처리지침」 등 최근 관련규정에 따라 분류식 계획지역 해당여부 및 분류식 검토
평가기준		지하수 수질현황 및 오염시 오염원, 오염범위 및 저감 대책

4) 토지이용(변경없음)

5) 토양

구 분	현 행	변 경
평가내용	① 토양오염 현황조사 - 토양오염 현황조사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거 사업지구 면적에 따라 최소 5개 지점 이상에 대한 토양(표토 및 심토 포함 최소 3개 토층) 측정 - 토양오염이 나타난 경우 지하수흐름을 고려하여 상·하류 지하수 수질 검사 실시	① 〈좌동〉 〈좌동〉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 및 결과 제시 - 사업부지 내 기존 건물(시설물), 지장물 등으로 전반적인 조사가 어려울 경우 철거 후 사업부지 내 토양오염 및 지하수 수질 조사계획 수립 - 사업지구 내 토양 오염의 개연성을 검토하고 지하수 흐름을 고려한 상·하류 지하수 수질 검사 실시

6) 지형·지질

구 분	현 행	변 경
평가내용	③ 지하수위 및 지하수 흐름 변화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 공사시 및 운영시 지하개발에 따른 지하수위, 지하수유출량 및 지하수 흐름 변화 예측 - 공사시 및 운영시 지하수위 유지방안 제시 - 지하수위 및 지하수유출량 모니터링계획 수립 (실시횟수, 주기, 구체적인 방법, 지점 등) ④ 지하 굴착에 따른 지반안정성 검토 - 지하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지반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지반안정성 유지방안 제시 ※ 사업지구 주변으로 지하철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시설이 위치할 경우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에 대하여 전문가 조사	③ <좌동> <좌동> - 사업부지 내·외 지하수 함양률의 변화 검토 - 예측 모델링에 사용한 코드와 적용성, 한계에 대한 설명 제시 - 예측 모델 보정방법을 설명하고 보정 전·후 수리상수(함양률, 수리전도도)의 변화량 검토 <좌동> <좌동> - 착공시점부터 사업부지와 주변의 지하수위 분포 및 흐름 현황 모니터링 - 지하수위 모니터링을 통한 지하수 모델링 검증계획 수립 ④ <좌동> <좌동> ※ 사업지구 주변으로 지하철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시설이 위치할 경우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에 대하여 전문가 조사 및 시설관리기관 협의내용 제시
평가기준		지하수위, 지하수 흐름 변화 예측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7) 동·식물

구 분	현 행	변 경
평가내용	②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동·식물 영향 검토	② <좌동>

구 분	현 행	변 경
	• 기존 식생 보존대책 수립 - 보존계획표 제시(이식, 존치 등) - 이식계획 수립시 가이식장 위치 및 관리방안 등 제시	• <좌동> - 사업지구 내 기존 수목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제시(수종, 수량, 규격, 생육상태 등) - 조사 수목에 대한 이식 재활용 또는 폐기 등 선정기준 수립 - 기존 수목 처리(보존)계획표 제시 • <좌동> - 이식 등 재활용 수목을 포함한 조경 식재계획 제시

8) 친환경적 자원순환

구 분	현 행	변 경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 재활용 지침상의 기준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상의 기준

9) 소음·진동

구 분	현 행	변 경
평가내용	① 정온시설 현황조사 • 사업지역과 측정지점간의 이격거리 및 좌표 표시 ⑤ 공사시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저감대책 수립 • 서울특별시 공사장 소음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2011.4) 이행계획 수립	① <좌동> • <u>사업지역과 측정지점간의 이격거리 및 층고, 좌표 표시</u> ⑤ <좌동> • <u>서울특별시 도시소음관리매뉴얼(2016.8)공사장 이행계획 수립</u>

10) 위락·경관(변경없음)

11) 일조장해(변경없음)

■ 현황조사항목(2개 항목)

1) 기상(미기상 포함)

구 분	현 행	변 경
평가내용	① 현황조사 • 사업지 주변 미기상 측정자료 제시(주야간) • 주변 건축물 규모 및 개발계획 등 설명	①<좌동> • <u>사업지 주변 미기상을 대표하고 사업시행의 영향이 경미할 고정측정지점을 선정하여 측정자료 제시(주야간)</u> • <u>주변지역의 미기후 현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동측정 자료 제시 권고</u> • <u>주변 건축물 규모 및 개발과정과 계획 등 설명</u>
	② 미기상 변화예측 • 기상측정망의 최대풍속(95% 범위) 자료를 활용하여 온도, 습도, 바람(풍향, 풍속)등 국지기상 측정자료와 함께 미기상 변화영향의 예측 및 비교·분석 • 주변지역을 포함한 사업지구 건물입지에 따른 바람길 영향 분석 - 사업지구를 둘러싼 삼각형 꼭지점에 위치한 AWS 자료 및 최소 8방위(동,서,남,북,북동,남동,남서,북서) 풍향에 대한 분석 실시	② <좌동> • <u>현장측정 자료와 인근 AWS 계절별 자료 등을 이용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미기상 변화 등 영향을 예측하고 현황과 비교·분석</u> • <u>사업지구 건물입지에 따른 바람길 영향 분석</u> - <u>사업지구 건물높이 증가로 인한 국지적 돌풍 완화 분석</u> - <u>주변 지역 풍량 감소를 완화할 수 있는 바람길 영향 분석 수행</u>
	③ 보행환경평가 • 미기상 변화 예측결과를 활용한 현상 분석 - 국지적인 풍속 및 온도 변화로 인한 오염농도 증가, 통풍량 감소, 쾌적도 등 분석 - 보행환경 평가는 사업시행 전·후 미기상 변화 수치자료를 활용하여 체감도의 비교분석 및 대안 검토	③ <좌동> • <좌동> - 사업시행 전·후의 지표면온도, 기온, 상대습도 등 보행 미기후 환경을 비교분석 - 조경 등에 의한 생태면적률 증감 분석과 이로 인한 잠재적인 미기후 변화 비교분석 및 대안 검토

2) 인구·주거(변경없음)

□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 중점평가항목(11개 항목)

1) 대기질

구 분	현 행	변경(안)
평가내용	① 공사시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대기질 영향예측	①<좌동> • <u>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각 배출원별 발생량 예측</u> - <u>건설장비별 배출계수는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편람 자료 인용 등</u>
	② 공사시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저감대책 수립 •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각 배출원별 발생량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 건설장비별 배출계수는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편람 자료 인용 등 - 공사장내 건설기계 PM-NOx 관리계획 수립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덤프트럭 등 노후 건설기계 사용 자제 및 엔진공회전으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최소화 방안 등)	② <좌동> •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저감대책 수립 - <삭제> - 공사장 내 건설기계는 최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친환경 건설기계 70% 이상 사용 • <u>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경유사용 자동차) EURO5 이상, 굴삭기, 지게차(건설기계) Tier3 이상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u>
	③ 운영시 사업지구 내·외부지역 대기질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 운영시 유발교통량 및 에너지소비에 따른 영향예측 실시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 난방 등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산정과정 명시) • 총량규제 대상 여부 및 대기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최적방지시설(BAT) 설치 검토 - 운영시 질소산화물 배출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방안 수립 • 냉온수기 및 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저녹스 버너 인증을 득한 제품 설치 등	③ <좌동> • <좌동> - <좌동> • 난방 등으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산정과정 명시) • <좌동> - <좌동> • <u>냉온수기 및 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저녹스 버너 인증을 득한 제품 설치</u>

2) 온실가스

구 분	현 행	변 경
평가내용	②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 •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도입 계획 수립 - 총 주차구획의 5% 이상 주차면 확보 -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완속 충전기는 건물 용도와 충전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계획 검토	② <좌동> • <좌동> -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면 확보 비율 제시 - 전기 인입선 등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 충전시설의 종류, 수량 등 제시
평가기준	•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 - 민간 건축물의 경우 건물 에너지사용량의 15% 이상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 12% 초과비율을 아래사항으로 대체 가능 • 에너지총량기준으로 소비량 감축설계시 감축량 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신재생에너지와 열병합발전, 하수열,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시설(ESS) 등의 시설에서 에너지를 생산 또는 공급 받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공공건축물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급의무비율 이상 - 조명기기 전력 부하량의 90% 이상을 LED로 적용하되 가로등, 보안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제품으로 대체 가능 • 녹색건축물 예비인증 및 에너지 소비 절약계획서 작성 - 녹색건축물 인증기준에 의한 최우수(그린1등급) 등급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EPI) 검토서의 평점합계 90점 이상 또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다만 건축물의 구조 설계상 90점 이상 또는 1등급 달성이 어려운 경우는 이를 소명	• <좌동> - 민간건축물의 경우 건물 에너지사용량의 16% 이상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 12% 초과비율을 아래사항으로 대체 가능 • 에너지총량기준으로 소비량 감축설계시 감축량 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신·재생에너지와 열병합발전, 하수열, 상수열,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시설(ESS) 등의 시설에서 에너지를 생산 또는 공급 받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좌동> - 조명기기는 LED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100% 적용 (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 조명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사유 제시) •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도입계획 - 주차단위구획의 5% 이상 주차면 확보 - 주차단위구획의 5% 이상 전기 인입선 등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 주차단위구획을 100으로 나눈 수 이상 충전시설 설치 - 충전시설의 10% 이상 급속충전시설 확보(단,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인 경우 충전시설의 50% 이상 급속충전시설 설치) • 녹색건축물 예비인증 및 에너지 소비 절약계획서 작성 -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따른 최우수(그린1등급) 등급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성능지표(EPI) 검토서의 평점합계 90점 이상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다만, 건축물의 구조 설계상 90점 이상 또는 1등급 달성이 어려운 경우는 이를 소명

3) 수질

구 분	현 행	변 경
평가내용	② 공사시 및 운영시 지하수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지하수 관련 현황 파악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하수질 측정 - 지하수 이용현황 조사(환경부, 국토교통부 자료 인용 및 실질 조사 등)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지하수질 및 지하수 이용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② <좌동> <좌동>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하수질 측정 - 지하수 이용현황 조사(환경부, 국토교통부 자료 인용 및 <u>실측</u> 조사 등) <좌동> ※지하수 수질조사와 토양오염 현황조사에서 지하수의 오염이 확인된 경우 오염원과 오염범위를 검토하고, 오염영향과 저감대책을 제시
	③ 운영시 우·오수처리계획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및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09)”, “하수분야 업무처리지침” 등 최근 관련규정에 의거 분류식 계획지역 해당여부 및 분류식 검토	③ <좌동>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및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분야 업무처리지침” 등 최근 관련규정에 따라 분류식 계획지역 해당여부 및 분류식 검토
평가기준		지하수 수질현황 및 오염시 오염원, 오염범위 및 <u>저감 대책</u>

4) 토지이용(변경없음)

5) 토양

구 분	현 행	변 경
평가내용	① 토양오염 현황조사 - 토양오염 현황조사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거 사업지구 면적에 따라 최소 5개 지점 이상에 대한 토양(표토 및 심토 포함 최소 3개 토층) 측정	① <좌동> <좌동>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 및 결과 제시 - 사업부지 내 기존 건물(시설물), 지장물 등으로 전반적인 조사가 어려울 경우 철거 후 사업부지 내 토양오염 및 지하수 수질 조사계획 수립

구 분	현 행	변 경
	토양오염이 나타난 경우 지하수흐름을 고려하여 상하류 지하수 수질 검사 실시	<u>사업지구 내 토양 오염의 개연성을 검토하고 지하수흐름을 고려한 상하류 지하수 수질 검사 실시</u>

6) 지형·지질

구 분	현 행	변 경
평가내용	③ 지하수위 및 지하수 흐름 변화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 공사시 및 운영시 지하개발에 따른 지하수위, 지하수유출량 및 지하수 흐름 변화 예측 - 지형현황, 토지이용, 지층구조, 투수계수를 등을 고려한 함양률 적용 분석 - 공사시 및 운영시 지하수위 유지방안 제시 - 유출지하수 재활용계획 수립 ④ 지하 굴착에 따른 지반안정성 검토 - 지하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지반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지반안정성 유지방안 제시 ※ 사업지구 주변으로 지하철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시설이 위치할 경우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에 대하여 전문가 조사	③ <좌동> <좌동> - 사업부지 내·외 지하수 함양률의 변화 검토 - 예측 모델링에 사용한 코드와 적용성, 한계에 대한 설명 제시 - 예측 모델 보정방법을 설명하고 보정 전·후 수리상수(함양률, 수리전도도)의 변화량 검토 <좌동> <좌동> - 지하수위 및 지하수유출량 모니터링 계획 수립 - 착공시점 사업부지와 주변의 지하수위 분포 및 흐름 현황 모니터링 - 지하수위 모니터링을 통한 지하수 모델링 검증계획 수립 ④ <좌동> <좌동> ※ 사업지구 주변으로 지하철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시설이 위치할 경우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에 대하여 전문가 조사 및 시설관리기관 협의내용 제시
평가기준		지하수위, 지하수 흐름 변화 예측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7) 동·식물

구 분	현 행	변 경
평가내용	④ 수목 식재계획 수립 • 공공시설(공원, 놀이터 등), 보호수(노거수) 등 기존수목에 대한 조사결과(이식, 보존가치 등)를 제시하고, 처리계획 수립(이식, 보존, 기증, 재활용 등) - 보존계획표 제시(이식, 존치 등) - 이식계획 수립시 가이식장 위치 및 관리방안 등 제시	④ <좌동> • <좌동> - 사업지구 내 기존 수목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제시(수종, 수량, 규격, 생육상태 등) - 조사 수목에 대한 이식 재활용 또는 폐기 등 선정기준 수립 - 기존 수목 처리(보존)계획표 제시 - <좌동> - 이식 등 재활용 수목을 포함한 조경 식재계획 제시

8) 친환경적 자원순환

구 분	현 행	변 경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 재활용 지침상의 기준	• 「<u>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u>」 상의 기준

9) 소음·진동

구 분	현 행	변 경
평가내용	① 정온시설 현황조사 • 공사 및 운영시 소음·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조사 - 사업지역과 측정지점간의 이격거리 및 좌표 표시 ⑤ 공사시 전체 공사단계(공정)별 저감대책 수립 • 서울특별시 공사장 소음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2011.4) 이행계획 수립	① <좌동> • <좌동> - 사업지역과 측정지점간의 이격거리 및 층고, 좌표 표시 ⑤ <좌동> • 서울특별시 도시소음관리매뉴얼(2016.8)공사장 이행계획 수립

10) 위락·경관(변경없음)

11) 일조장해(변경없음)

■ 현황조사항목(2개 항목)

1) 기상(미기상 포함)

구 분	현 행	변 경
평가내용	① 현황조사 • 사업지 주변 미기상 측정자료 제시(주야간) • 주변 건축물 규모 및 개발계획 등 설명	① <좌동> • <u>사업지 주변 미기상을 대표하고 사업시행의 영향이 경미할 고정 측정지점을 선정하여 측정자료 제시(주야간)</u> • <u>주변지역의 미기후 현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동측정 자료 제시(예. 이동차량관측)</u> • <u>주변 건축물 규모 및 개발과정과 계획 등 설명</u>
	② 미기상 변화예측 • 기상측정망의 최대풍속(95% 범위) 자료를 활용하여 온도, 습도, 바람(풍향, 풍속) 등 국지기상 측정자료와 함께 미기후 변화영향의 예측 및 비교·분석 • 주변지역을 포함한 사업지구 건물입지에 따른 바람장 영향 분석	② <좌동> • <u>현장 측정자료와 인근 AWS 계절별 자료 등을 이용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미기상 변화 등 영향을 예측하고 현황과 비교·분석</u> • <u>사업지구 건물입지에 따른 바람길 영향 분석</u> - <u>사업지구 건물높이 증가로 인한 국지적 돌풍 완화 분석</u> - <u>사업지구 및 주변의 풍량 감소를 완화할 수 있는 건물들의 배치 및 바람길 영향 분석</u>
	③ 보행환경평가 • 미기상 변화 예측결과를 활용한 현상 분석 - 국지적인 풍속 및 온도 변화로 인한 오염농도 증가, 통풍량 감소, 쾌적도 등 분석 - 보행환경 평가는 사업시행전·후 미기상 변화 수치자료를 활용하여 체감도를 비교 분석하되 보행자 높이에서 온열환경 변화 검토	③ <좌동> • <좌동> - <u>사업시행 전·후의 지표면온도, 기온, 상대습도 등 보행 미기후 환경을 비교분석</u> - <u>조경 등에 의한 생태면적률 증감 분석과 이로 인한 잠재적인 미기후 변화 비교분석 및 대안 검토</u>

2) 인구·주거(변경없음)